

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규정

제정 2020. 05. 18.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이라 한다)의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독지가의 찬조금
3.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4.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의 수익금
5. 기타 잡수입금

제3조(기금의 운영원칙) ① 기금은 제4조의 체육진흥사업 이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다.

② 체육진흥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.

③ 기금의 세입 및 세출 절차는 체육회의 일반회계 규정을 적용

한다.

제4조(기금의 사용) 이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
2.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
3. 체육진흥계획에 의한 사업 중 필요한 사업
4. 체육회 운영비
5. 기타 경기력 향상 및 체육진흥의 수반사업

제5조(기금의 예탁) ① 규정에 의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② 조성된 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장 직명으로 예치한다.

제6조(회계관직)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체육회 사무처장을 기금운용관, 총무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.

제7조(기금운영계획) ① 매 회계년도의 기금운영계획을 확정 전에 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

한다.

1. 기금의 운영방법 및 규모
2.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
3.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장부 등 비치) 기금관리원은 기금의 사용,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,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기금관리대장
2. 예치증서 및 통장
3. 현금출납대장
4. 기타 필요한 서류

제9조(기금의 결산 및 보고)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마다 전 년도의 기금 세입,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(준용규정) 기금관리 등 회계관계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<2020. 5. 1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